파주시공고 제2026-3066호

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27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: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2. 개정이유

○ 「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」 개정으로 지류형 지역화폐 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, 지류형 지역화폐의 인수·관리 및 환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가맹점 등록 신청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지역화폐의 종류 규정 삭제(안 제2조)

나. 담당공무원 변경 시 업무 인계·인수(안 제8조)

다. 지류형 지역화폐의 관리(안 제9조)

라. 지류형 지역화폐의 환전(안 제10조)

마. 가맹점 등록 신청 서식 개정(안 별지 제1호서식)

바. 지류형 지역화폐 관련 서식 신설(안 별지 제6호서식 ~ 제10호서식)

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http://www.paju.go.kr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: 2026년 12월 17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: 서면·우편·팩스 등

다. 기재내용: 성명·주소·연락처·의견

라. 제출기관: 파주시장(민생경제과 민생경제팀)

○ 주소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, 차고동 2층 민생경제과(우 10932)

○ 전화: 031-940-4522 / 팩스: 031-940-4529 / 이메일: gliptide1@korea.kr

PAJU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　　견	비 고

PAJU

➡ 민원인 편의고려, 임의서식임(의견제출 관련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필수 기재내용작성 후, 자유롭게 제출)